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10일, 이상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상회의원)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¹⁾으로 일 평균 약 5.2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해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 및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1) “2024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1.24.

- 따라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모든 침해사고에 적용하기보다는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